

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2898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2021. 11. 17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(“22.1.13. 시행)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 제외 대상 규정(안 제4조)
-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을 규정(안 제5조 ~ 제6조)
-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의견 검토 규정(안 제7조)
- 의견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(제8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2022. 1. 13. 시행되는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절차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자치행정의 본질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를 수 있으며,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 부여로 자치행정 운영에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주민은 스스로 시정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